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20. 12. 1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김 인 호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발의안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완치 후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완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은 신속한 방역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완치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두터운 연대는 위기 극복의 필수요건으로, 배제가 아닌 포용의 관점에서 감염자와 완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